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양 재 열*·김 상 수**

<요 약>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준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 행정형벌,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행정의 개입, 재범, 자치경찰

*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위원 (제1저자)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특사경 역할과 지명 직무법률
III.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확대 현황
IV. 특사경 전담부서의 직무확대 분석
V. 결 론 |
|--|

I. 서 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 다양한 관계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동생활에는 개개인의 생각, 생활의 방식, 각기 이해관계 등이 다름에 따라 사회규범이 요구된다. 사회규범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행동의 정당화 근거와 타인의 비난의 근거로 채용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사회생활 외적 질서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존재함에 따라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은 내용과 기능이 동태적으로 변화되고, 급격히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모습은 변화한다 할 수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2012: 22). 일반적으로 행정은 강제성을 띄게 되는데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회규범에 이탈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하는 것이 행정임을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행정’의 사전적 의미를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입법·사법 이외의 국가의 통치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정은 국가의 통치 작용이 분명함에 집행에 있어 행정 목적가치 실현을 위해 도덕적인 일반 사회규범에 따라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신형균, 2008: 29). 그렇다면 국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활동과 사회규범 이탈 행위에 대하여 행정분야에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견제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 중에는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있다. 이중 전통적 수단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행정벌이 있다. 행정벌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행정형벌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김항규, 2008: 469-470).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김항규, 2008: 32) 중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그 당위성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 행정조직 내 행정형벌을 전담하는 특사경 전담조직중 가장 먼저 발족되어 활동중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모델로 하여 조직운영 10년 동안의 운영현황과 조직변천 과정을 투영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집행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자치경찰제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자치분권위원회, 2018.11.13.)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I. 특사경 역할과 지명 직무법률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복잡다기한 행정의 각각의 분야를 관련 성문법으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가 어렵고, 일반사법경찰이 행정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를 수사하는 것이 불충분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당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 16). 행정법규 위반 범죄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광역화되면서 이에 따른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련범죄에 대하여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양재열, 2015: 35). 국가적 권한의 행사인 행정의 특정영역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는 상당히 집적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직무의 범위가 특수한 사항(전문성, 격리성, 현장성, 보안성)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최종영, 정주호, 2017: 7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활동지역인 서울시에에서만 행정법규 위반사건 10,505건을 수사하여 생활밀착형 민생침해사범 11,846명을 입건하였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 9). 구체적인 특사경의 역할은 식품과 보건위생,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부동산 투기억제, 개발제한구역 보호, 세무, 병무 등 관련 행정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에 대한 수사가 주 업무로서 그 역할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중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사건을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균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홍정선, 2002: 4). 따라서 이들의 수사대상은 행정법규의 범람과 함께 행정의 다양한 분야(거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박종국, 2002: 364).

대검찰청 자료(2018년)에 의한 ‘전국 특별사법경찰 인원’은 2014년 1만5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중인 특사경 인력은 1만9469명으로 전년(1만7462명)보다 11.5%(2,007명)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사경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도 2017년 9만9817건으로 전년(9만8758건)보다 1,059건 늘었다. 수사관 1인당 년 평균 5.12건을 수사하여 송치한 것이다. 2018년에는 특사경 인력이 2만 여명으로, 송치 사건은 10만 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특사경 전담기관은 조세 범죄를 다루

는 국세청으로 4,424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단속하는 고용노동부로 근로감독관 등 1,67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8.5.30.).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구성된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정부기관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를 제외한 14개 부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특사경 업무만 전담수행하는 수사전문화 조직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18.6.6. 검색).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경우 사회현상의 변화로 전담조직의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특사경 지명과 관련된 법률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으로 서울특별시 외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등 17개 시·도에서 특사경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전담조직은 단(團) 단위에서부터 팀 단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단속분야는 주로 환경, 식품위생, 청소년보호, 의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가짜 상표거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부분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단속 등 지속적으로 단속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1. 특사경 직무관련 법률

특사경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며, 동법 제6조에서는 행정의 특정영역에

1)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 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 자료 청구, 접수일 및 번호: 2016.05.14., 3505856
 질의: 귀 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보훈처와 소속공공기관인 한국복지의료공단 소속의 각 보훈병원, 보훈휴양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운영실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각 기관(부서)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현황, -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건처리 현황 및 각 관할 지방검찰청 송치 현황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청이 없었기에 청구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

서 상당히게 집적된 행정전문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사 관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특사경의 구체적인 직무관련 행정법과 특별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145개의 행정 개별법이 있다. 또한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의 일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2. 행정형벌과 행정형법

행정형벌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 목적의 명령이나 금지위반 등 행정목적의 직간접적 침해에 대한 제재로서 집행벌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으며,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야 한다. 또한 의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요건만으로도 과할 수 있는 집행벌과 달리 행정벌은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정형벌은 형법이 적용되며, 벌칙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해당되는데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로 법원의 심리판단에 의한다.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로 규정되어 행정형법범과 형사범의 구별의 실익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서원우가 “형사범(벌)은 자연범(自然犯)으로 반도덕성·반사회성·범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처벌되는 행위임에 반해, 행정범은 법정범(法定犯)이나 특별법범(特別法犯)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자는 절대적 또는 본질적으로 구별 될 성질이 아니다” 라 하고 있다(서원우, 1997). 또한 M. E. Mayer는 “형사범은 국법 이전에 문화규범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반윤리적 성격임에 반해, 행정벌은 국법에 의해 범죄가 된다” 라 하고 있다(박종국, 2002: 185-188).

3. 행정 실효성확보의 의미와 수단의 구분

행정의 실효성확보의 의미는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의 행위형식에 있어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거나 사후 준수 또는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 수단에는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등 전통적인 수단이 있다. 이 외에 근래에는 과징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인가나 허가의 취소, 의무위반자나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는 등 새로운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김문헌 외, 2004: 101-103).

그렇다면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 행정가치 중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가치인 공익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우리의 행정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행정벌에서도 행정질서벌을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는 실제 행정주체가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형벌은 국가가 의무위반자, 즉 행정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다(홍정선, 2003: 476). 본 논문에서는 행정형벌 집행과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I.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확대 현황

1. 조직의 변화

서울특별시의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로 출범한지 10년이 경과되었다.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33대~34대 서울시장 오세훈은 '07.10.16. 제7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를 위하여 수사전담조직 구성·운영을 합의하였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 29).

수사의 대상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범으로 한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운영과 경비의 부담을 전담하고,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파견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08.01.01.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조직명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하였다. 조직구성은 1과 2팀을 시본청에 두었고 25개 자치구에는 '지원반'을 두어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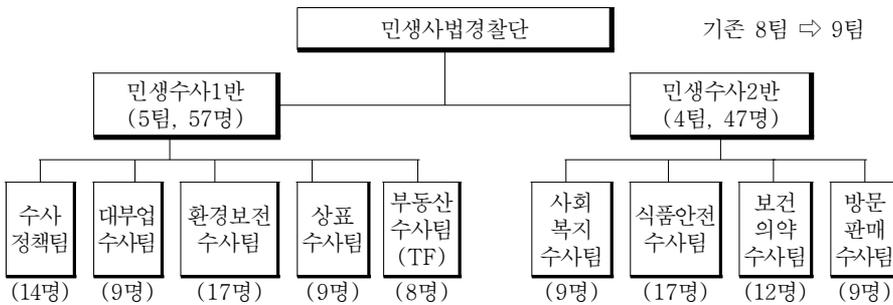
출범 당시에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분야의 범죄를 단속하도록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받아 활동하다 '08.05.27. 청소년보호 사무를 추가로 지명 받으며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출범 당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1과 2팀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10.09. '특별사법경

찰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고 조직도 1과 6팀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후 '15.11. '특별사법경찰과는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과 단위 규모로 2개 반, 8개팀으로 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18.07. 조직개편을 통해 2개 반, 9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 39). 하부조직인 수사관의 인원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수시로 팀의 수가 증가되는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중간 관리층인 5급(팀장급)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서 조직의 허리가 보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7.27. 신규 지명분야인 부동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수사 활성화와 조직의 명칭·기능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조정하고자 아래 <그림 1>과 같이 조직개편을 하였다.

<그림 1> 민생사법경찰단 2018.7.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2018.7.27. 현재)



출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부자료(2018.7.27.).

위의 개편에 따른 변화된 수사팀은 기존 '민생수사지원팀'을 '사회복지수사팀'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사업자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행위를 수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생수사총괄팀'을 '수사정책팀'으로, '상표권침해수사팀'을 '상표수사팀'으로, '부동산불법행위 수사팀'(TF)을 '부동산수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다.

2. 민생사법경찰단 10년 활동 내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지명사무 12분야에서 입건한 행정형법 위반사건은 아래 <표 1>과 같이 10,505건이며, 이 관련범죄 입건자는 11,846명이었다. 입건 10,505건 중 검찰의 기소가 9,363건으로 기소율은 약 94%를 유지하였다. 이 중 구속기소는 25건으로 전체 기소건의 약 0.3%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지명사무 별 입건현황

구분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건수 (100%)	5,431 (51.6%)	411 (3.9%)	320 (3.0%)	606 (5.8%)	1,373 (13%)	670 (6.4%)
구분	부정경쟁 (상표)	개발제한 구역	화장품	의료 기기	석유 및 자동차	대부 및 방문
건수	732 (7%)	514 (4.9%)	14 (0.1%)	77 (0.7%)	236 (2.3%)	121 (1.2%)

출처: 민생사법경찰단 '18. 4월 특별사법경찰 주요활동사항 보고, 재구성.

또한 입건사건 10,505건의 범죄 발각원인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이 기획 수사를 통한 인지사건보다 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고발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특사경 전담부서의 자체 범죄 인지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사건의 발각원인별 현황

구분	자치구 등의 고발	인지 (기획수사)	입건 계
건수	6,138 (58%)	4,367 (42%)	10,505 (100%)

출처: 민생사법경찰단 '18. 4월 특별사법경찰 주요활동사항 보고, 재구성.

한편 송치된 사건의 처벌현황을 보면 약식기소 된 8,264명 중 42.5%인 3,512명이 100만원~300만원미만으로 처벌되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7.5%가 벌금 50만원~100만원미만으로 처벌되었다. 아래의 <표 3>은 구약식으로 처벌된 현황으로 전체 처벌사건의 1.48%인 123명이 500만을 초과하는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구약식 처벌 현황

구분	인원수 (명)	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계	8,264 (100%)	1,242 (15%)	2,275 (27.5%)	3,512 (42.5%)	1,112 (13.5%)	123 (1.48%)

출처: 민생사법경찰단 '18. 4월 특별사법경찰 주요활동사항 보고, 재구성.

그렇다면 행정형법 위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징역형은 어느 정도인가? 아래의 <표 4>와 같이 10년 동안 25건의 구속사건에서 31명을 구속하였다. 공판결과 최소 징역 5월에서 최대 징역2년 집행유예 2년의 형집행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억에서 30억의 추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로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징역1년 6월, 벌금 66억 원이 선고²⁾되어 서울시 특사경의 처리사건 중 최고액의 벌금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표 4> 10년 운영기간 동안의 구속처분 현황

분야	식품위생	원산지	의약	환경 (석유·자동차 포함)	대부 및 방문	계
구속 (건/명)	6/10	1/1	6/7	10/10	2/3	25/31

출처: 민생사법경찰단 '18. 4월 특별사법경찰 주요활동사항 보고, 재구성.

3. 민생사법경찰단 10년 활동기간 중 직무확대

1) 서울시 특사경의 직무확대 필요성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공공재 사용을 억제하는 행정사무와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추출기, 파우치 포장기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추출기에 일정한 양의 마황, 작약, 산조인, 단삼, 지각, 만형자, 황금, 의이인, 감초, 소목, 황기, 백출, 당귀, 계지, 차전자, 복령, 숙지황, 생강을 저울로 달아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추출, 수증기 제거, 재추출 등의 작업을 거쳐 파우치 포장기에서 100ml 파우치로 자동포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방다이어트한약'을 만든 사실, 피고인이 만든 '비방다이어트한약'은 들어가는 위 약재들의 함량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지는 사실, 피고인은 한약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 다음, 한약사와 전화상담원이 전화상으로 구매고객의 생활습관, 간질환, 간염, 혈압, 심장질환, 당뇨, 위장질환, 갑상선, 황달, 천식, 알레르기, 변비, 빈혈, 생리주기, 손발 냉온증 등 건강상태를 자세히 상담하게 하여 구매고객으로 하여금 한약사가 구매고객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용 한약을 지어서 보내준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나, 실제로 한약사들은 피고인이 이미 단계별로 강도를 달리하여 만든 1, 2, 3단계 '비방다이어트한약'을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일수만을 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한약사 등이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송부하는 구매고객의 단계별 복용일수를 확인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비방다이어트한약'을 복용방법, 인가서 등을 동봉하여 한약국 명의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비방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단속강화 필요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가 9,857,767명으로 인구밀도가 16,288명/km²으로 강원도의 90명/km²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밀집된 도시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인구, 2018.1. 기준). 서울시는 완전한 도시경제와 문화산업, 생활산업 등이 행하여지는 도시로서 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부문에서 서울의 집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내국세의 42.7%를 점하고 있어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이 0.4%(전국의 0.85%), 광공업이 24.5%(전국의 25.3%), 그리고 상업·서비스업이 75.1%(전국의 30%)로 1차산업이 매우 낮은 반면, 2차산업(제조업)과 특히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http://cafe.daum.net/dream seoulkr, 검색어: 서울시의 산업구조, 검색일: 2018.7.11).

따라서 산업구조와 인구밀집에 따른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확장된 직무

’08.01.01. 서울시 특사경 전담조직의 출범을 기점으로 ’17.12.19.까지 수사가능 법률이 55개(12개 지명직무 분야)였으나, 이후 ‘주택법’ 등 16개 법률 추가(14개 지명직무 분야)되어 71개 법률로 직무범위가 확장되었다.

’08.02.21. 출범 초 직무와 지명법률은

- 식품위생 분야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 범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이며,
- 원산지표시 분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등 3개 법률,
- 공중위생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 1개 법률을,
- 의약 분야는 「약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범죄 부분을 직무관련 법률로 하며
- 환경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32개 환경부 소관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이후 ’08.05.27. 청소년 분야가 뒤늦게 추가 직무로 지명되어 청소년보호법을 직무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고용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였다.

‘10.11.22 지명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행위 단속수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직무관련 법률로 하고 있다. 또한 ‘12.04.18.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분야를 지명받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15.08.26.에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분야, 화장품 분야, 의료기기 분야, 가짜석유 및 자동차 분야를 확대 지명받게 되었다.

- 불법대부업 및 방문판매, 가짜화장품 및 의료기기, 가짜석유 유통 및 자동차 불법정비 단속분야는 ‘15.08.26.에 지명 받아 짧은 기간이지만 448건을 입건하여 그 중 4건을 구속기소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 ‘16.07.26.에는 원산지표시 단속분야는 「대외무역법」을 추가 지명받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17.12.19.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추가지명 된 법률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석면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16개 법률이며, 2018.1.22부터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단속사무를 새로이 지명받아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018.1.22., 내부문서).

IV. 특사경 전담부서의 직무확대 분석

본 분석은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간 운영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내부환경, 즉 서울시와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의 관계와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요소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등 조직 외부의 주요한 변수를 통해 도출되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들을 조망하고자 SWOT 분석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표 5> 직무확대와 행정집행력 강화 SWOT 분석

<p>Strength(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최초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으로 경험 축적 - 대시민 홍보강화에 따른 조직 경쟁력 확보 - 자치구 협조로 수사인력 확보 원활 - 시장단과 검찰의 적극 지원 - 행정집행력 강화(년 평균 1,000여 건 형사입건) 	<p>Weakness(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인력의 전문성보유 부족 - 인지사건 수사 미흡(고발사건 처리 50% 이상) - 범죄수의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 파견 법률자문검사의 수사활동 자문 및 지도 미흡
<p>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분야 특사경사무 지속 확대 - 시민생활 저해 민생치안사범 척결의지 강화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변화 기대 - 특사경 전담부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영 	<p>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연루자 조직 진입 - 조직내 무임승차자 증가

1. 강점(Strengths)요인 분석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 활동내역을 통해 도출된 강점요인(Strengths)을 정리하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사경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얻은 수사경험과 축적된 수사기법 등 수사 know how를 타 지자체 특사경 전담조직에 전수하고 있다.

서울시의 특사경 전담부서 창설은 당시 관련법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 직무법 제1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조 를 법적근거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사법경찰직무법 제1조는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조항이었을 뿐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된 결정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에서 활동중인 366명의 민생분야 특사경(본청 13명, 자치구 353명) 활동이 미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하였고, 검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 실시하는 특사경 전담조직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례없이 현직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를 참여하게 하여 특사경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였다(<https://blog.naver.com/pysbalams/>).

이와 같은 설치배경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특사경 전담조직은 년 평균 1,000여건의 행정형법범을 입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집행력 강화 기능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의 경제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증가 둔화, 청년층의 고용부진 등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생활 주변에 범죄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특사경 활동으로 년 1,000여건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를 단속 수사하여 검찰이 기소유지를 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집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 구현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2. 기회(Opportunity)요인 분석

최근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는 소관분야별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과거에는 법률에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단속이 느슨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국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업무 분야에서의 특사경사무가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 이는 특사경사무의 근거 법이 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1956.1.12 제정된 이후 2018. 7.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민생치안사범 척결의지의 강화에 따라 96회의 개정된 것을 보면 그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사경 전담부서(팀)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집행력에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9개구에서 특사경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 269). 이들 자치구의 전담부서 인력은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본청의 민생사법경찰단에 파견되었던 복귀인력을 발령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경찰제도 개혁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행은 특사경의 위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에서의 특사경사무는 자치경찰의 유일한 수사권을 가진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도의 확대시행은 특사경사무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긍정적인 예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민생치안 안정에 특사경사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약점(Weakness)요인 분석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구성은 총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직렬별로 살펴보면 행정 63명, 전산 2명, 보건 21명, 환경 6명, 운전 2명, 기계 5명, 화공 2명, 세무 1명, 속기 1명, 토목 1명, 약무 2명, 수의 1명, 간호 2명, 의료 2명, 임기제 1명, 관리운영 1명으로 행정직이 56%로 다수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2017: 278).

한편 실제 수사를 행하는 94명의 수사관은 시가 54명, 자치구 파견이 40명으로 자치구 파견의 비율이 43%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 구성비는 수사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견의 경우 근무기간이 단기 1년에서 2년 정도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파견 전 자치구에서의 보직도 현 사법경찰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부서근무자로서 수사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직무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실제 현장 인지사건보다 수사의뢰나 고발사건 처리가 <표 2>사건의 발각원인별 현황과 같이 58%인 점은 조직의 인력구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구성의 약점을 앓고 있어 사건 발각에 인지사건이 양적으로 적은 면도 있으나 더욱 심각한 것은 동종사건의 재범이 많다는 것이다.

행정형법범의 동종사건 재범율이 강력범죄 재범율 10.4%(전체 14,336건 중 재범 1,487건)와 비교하였을 때, 보건범죄가 36%(전체 11,204건 중 재범 4,047건), 환경범죄 13.5%(전체 2,538건 중 재범 344건), 병역범죄 42.4%(전체 9,440건 중 재범 4,003건) 등으로 재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가정보포털, 2016.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이는 범죄로 발생된 수익이 형사처벌의 강도보다 높아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짐으로서 동종범죄의 재범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을 우선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은 법률제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모든 행정법 위반사범의 범죄수익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하여 재범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특사경 전담조직은 수사 및 단속활동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부장검사급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

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전담부서 활동초기에는 행정공무원이 사법행정에 능통하지 못하여 파견 검사의 수사업무 지도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0년의 지난 현시점에서는 수사자료의 축적과 도제식으로의 업무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법률검토와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를 수사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조직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는 현재 4명의 변호사가 6급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직 경찰을 특별임용하여 수사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위협(Threat)요인 분석

특사경 조직은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행정법에 대한 수사를 전통적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출된 조직이다(박경래, 이원상, 2009: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사경 전담조직은 그 못지않게 수사업무의 청렴성은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 근무조직에서 범죄를 범하고 전담조직 내로 진입하는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³⁾⁴⁾, 또는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구의 파견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⁵⁾⁶⁾ 이와 같이 수사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자가 발령받아 무임승차하면서 안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본인은 물론 조직까지 누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수사관 개인의 정신력 강화와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찰 “서울시 공무원 3명, 버스업체 뇌물 받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210425066437&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검색일: 2018.12.17.).

4) ‘뇌물에, 문서 건네고’ 버스업체-서울시 공무원 ‘유착’,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2090200004?input=1179m>(검색일: 2018.12.17.).

5) 만취한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 행패,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acd=2749224>(검색일: 2018.12.17.).

6) 10대, 수갑찬 채 도주...특사경 ‘난동’,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3/2013110390184.html(검색일: 2018.12.17.).

V. 결 론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생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 1. 1. 발족한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를 위하여 수사전담조직을 구성·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의 단속사건이 특사경제도의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며 국가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되었던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었고, 연평균 1,000여 건의 행정법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행정기관 내의 조직이 직접 행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실적의 힘은 분산되어 운영되었던 특사경 사무의 중복을 배제하고 전담부서로 집중화시킴으로서 행정집행력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게 하였다. 또한 수사 전담부서의 단속권한 강화를 위해 특사경의 지명법률의 확대를 선도하며 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결국 서울시의 2008년도 전담특사경 운영모델은 현재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게 하는 단초가 되게 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9개 자치구에서도 행정의 실효성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전담특사경 조직을 운영중에 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치안행정 권한을 부여하여 민생치안인 교통·방범·안전 분야와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는 생활안전, 교통 일부, 경비 특별사법경찰 등 국가경찰의 일부를 수행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문제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전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2018.8.12).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수사권 보유여부는 특사경 전담조직의 변화를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일 경우 각각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운영되었던 현재의 특사경 전담부서는 굳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동일 단체장의 관리를 받는 수사조직을 경찰행정분야와 일반행정분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등 낭비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정부 국정운영 5대 목표중 하나인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일 경우(제주자치경찰) 현재 행정조직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담조직을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여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안(案)이 거론되고 있으나 자치경찰 현원 125명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도(道)내 치안사무 중 극히 일부인 10~30% 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동규, 2017: 15-16).

이와 같은 업무 업무분담율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제주자치경찰의 부정적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과 같이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전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기존 특사경 전담부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집행력,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기존과 같이 존치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포털 (2016).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 김동규 (2017).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시 포럼 주제발표.
- 김항규 (2008). 행정과 법. 서울: 대영문화사.
- 박종국 (2002). 행정법개론. 서울: 동방도서주식회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018.7.27., 내부자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부자료(행정 부서장 방침 제3호, 2018.1.16).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8. 4월 특별사법경찰 주요활동사항 보고 자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018.1.22., 내부자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백서, 2018.11.
- 서원우 (1997). 전환기의 행정법 이론. 서울: 박영사.
- 신현기, 남재성, 이상열, 양재열 (2017).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 신형균 (2008). 현대 행정학의 이해. 서울: 선학사.
- 양재열 (2015).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 방안.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윤영진 외 (2012).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2018.11.13.
- 전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2018.8.12.
- 최종영, 정주호 (2017).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3, 63-79.
- 한국경제신문 (2018, 5, 30). "檢·警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969951>.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홍정선 (2002). 행정법원론(상). 서울: 박영사.
- 홍정선 (2003). 행정법원론(상). 서울: 박영사.
- <https://blog.naver.com/pysbalams/100047755171>, 검색일: 2018.6.20.
- <http://cafe.daum.net/dreamseoulkr>, 검색일: 2018.7.11.
-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acd=2749224>, 검색일: 2018.12.17.
-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2090200004?input=1179m>, 검색일: 2018.12.17.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dir/2013/11/03/2013110390184.html>, 검색일: 2018.12.17.

【Abstract】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Power A Study on the
Expansion of Jobs: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s'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Judicial Police Team

Yang, Jae Yeol·Kim, Sang Su

Recently, our countr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Keywords: Administrative punish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Criminal recidivism, Municipal police